

1.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0년 10월 26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0년 10월 28일
- 상정일자 : 제2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년 11월 24일), 수정 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제안이유

-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20.8.25.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우리 市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본칙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적극행정위원회가 지원기능을 넘어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를 구분하였음.

- 또한,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제정당시 표준안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련전문가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적극행정 유공자에게 포상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이 개정 조례안은

-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의 개정(2020. 8.25.)에 따라 대구시의 실정에 맞는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신설과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등의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안 제3조에서는 운영규정 제10조1)의 개정에 따라 항명을 포함한

1)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시·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

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입법컨설팅²⁾을 근거로 현행 조례 같은 조 제2항에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가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례의 사용자 편의성과 법률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운영규정 제11조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안 제5조**에서는 조례 제정 당시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기에 맞췄던 위원의 임기를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적극행정 운영조례 표준안”과 타 시·도의 조례를 참고하여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음.

이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운영규정 제11조³⁾에서 위원 수를 확대함에 따라 지역 내 관련 전문가 인력의 지속적 확보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위원회 구성의 편의성과 탄력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판단됨.

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 필수조례 맞춤형 입법컨설팅 쟁점사항 통보**(’20. 8월 자치법규입안지원팀)
 - **(쟁점 2)**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인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위원회를 대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해당 조례를 필수조례 적기마련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검토의견)** 행정안전부와 협의 결과, 인사위원회가 아닌 위원회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대신하는 내용의 조례는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조례에 해당하므로 합동평가 실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향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3)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 ▶ **안 제9조제2항**에서는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 의견을 수렴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음.

그러나, 현행 조례 같은 조 제1항에서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로 명시하여 이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2항을 신설하지 않아도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는 명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

또한, 운영규정 제10조에서도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자문수당 지급과 관련한 규정이 없고, 운영규정 제11조 개정 시 위원 수의 상한선을 15명에서 45명으로 확대한 주요 사유가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으므로, 굳이 별도의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관련 전문가 의견 청취 보다는 내부 위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사안에 따라 실·과별로 구성되어 있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수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있을 것임.

- ▶ **안 제10조**에서는 운영규정 제13조제1항4)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그 밖에** 조례 전반에 대해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변경하였음.

4)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개정안 제출은 운영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적극행정의 확산과 정착을 도모하고 국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강화, 소극행정 감시 및 문책 등 공무원들의 인식개선과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조례 개정의 취지와 목적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위법 상 근거규정의 부재와 상위법에 근거없는 관련 전문가 자문수당의 지급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적극행정위원회의 위원수가 45명이면 너무 많은 것이 아닌지?</p>	<p>○ 회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실제 회의 개최 시에는 분야별로 8명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게 됨.</p>
<p>○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조례 운용의 효율성과 유연성 차원에서 제3조 제1항 제1호를 영 제10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 표기하는 것은 어떤지?</p>	<p>○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p>
<p>○ 개정조례안에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조항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왜 그런 것인지?</p>	<p>○ 근거규정은 상위법 제 11조에 규정되어 있지만, 조례에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p>
<p>○ 검토보고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제9조 제2항의 자문수당 지급 규정은 이미 제1항만으로 지급 근거가 충족되어 삭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p>	<p>○ 제1항과 제2항 2차례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2항은 삭제토록 하겠음.</p>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등을 통한 충분한 심의와 심도 있는 논의결과에 따라 적극행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상위법 근거를 명시하고, 전문가 수당 지급 관련 중복 규정을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3조와 제9조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6. 수정안 요지

- 붙임 '위원회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 제목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을 “(적극행정위원회 등)” 으로 한다.

안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안 제7조 중 “관련전문가” 를 “관련 전문가” 로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안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출 안	수 정 안
<p>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생략)</p> <p>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p> <p>2. ~ 3. (생략)</p> <p>< 신설 ></p> <p>제7조(의견청취) 지원위원회의는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수당 등)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등) ① (제출안과 같음)</p> <p>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p> <p>2. ~ 3. (제출안과 같음)</p> <p>② <u>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u></p> <p>제7조(의견청취) ----- ----- -----관련 전문가----- ----- -----.</p> <p>제9조(수당 등) ① (제출안과 같음)</p> <p>② < 삭제 ></p>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3.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리한다”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지원위원회의”를 “위원회”로, “관련전문가”를 “관련 전문가”로 한다.

제8조 중 “지원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제 >~~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0조) 중 “지원위원회”를 각각 “위원회”로 하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적극행정 포상) 시장은 매년 적극행정으로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공로가 있는 기관 또는 공무원 등을 선발하여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